

전자통신기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제도 개선방안



임 호 기
본회 산업전자과/대리

1. 서 론

세정부 출범 이후 세계적인 규제완화의 추세를 타고 행정규제 완화 내지는 제도개선을 하겠다는 정부당국의 의지도 어느때 보다 높은 듯하고 이에 대한 산업계 등 민간의 기대 또한 매우 크다 하겠다. 실제로 전자산업 중에서도 필자가 담당하고 있는 통신산업의 경우 최근 1년여 동안에 만도 적지 않은 부분에서 행정규제 완화가 이루어졌으나 업계의 기대 수준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특히 규제가 없어서도 안되고 지나치거나 불필요해서는 안되는 형식승인 및 검정제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 생각된다.

사실 형식승인 등에 관한 제도는 수년전까지만 해도 정부의 고

유한 통제와 권한의 영역이라고 생각할 만큼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 일관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통신시장 개방화와 정보고속도로 구축 등 급변하고 있는 국제 통신환경을 반영한 단 말장치의 통신망 접속 자유화가 실현됨에 따라 새로운 대내외의 경쟁적 환경에 놓이게 되었다.

또한 아직은 구체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은 없으나 형식승인의 상호 인정이 국가별로 논의 되고 있으며 미국을 비롯한 선진 각국들은 상대적으로 형식승인 관련제도가 까다롭게 되어 있는 나라에 대해서는 무역 보복까지 들먹이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형식승인 및 검정제도의 본래 목적에 충실하면서 관련업계의 산업활동과 일반국민의 통신·전자기기 사용에 지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제도 개선을 모색코자 한다.

참고로 본고에서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분야는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형식승인, ▲전파법에 의한 무선설비 형식검정 및 기술기준 확인증명 규칙, ▲전파법에 의한 전자파 장해검정 등이며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을 참고 했음을 밝혀둔다.

2. 현황 및 문제점

1)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

가. 현 홀

근거법령은 전기통신기본법 제33조와 이를 근거로 한 정보통신부 고시 제1995-89호에 의해 실시되고 있는데 대상품목은 크게 ①기간통신망의 분기점에 유선으로 직접 접속되는 기자재, ②기간통신망에 직접 접속되지 아니하는 기자재중 기간통신망, 기간통신망 운용자 또는 기간통신망 이용자에

게 위해를 줄 수 있는 기자재, ③ 종합유선방송 전송망의 분계점에 직접 접속되는 기자재이다.

목적은 전기통신망에 대한 손상, 전기통신망 과금기능의 오동작, 전기통신망의 운용자 또는 이용자에 대한 전기적 충격, 전기통신망의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역무의 질적인 저하 초래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첫째는 변경승인제도에 관한 사항이다.

변경승인제도의 본래 목적이 통신망에 위해를 줄 가능성이 없는 범위 내에서 새로이 형식승인을 득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성을 추구함인데 변경승인의 절차가 지나치게 제한적이고 변경승인의 절차가 복잡하고 이로 인해 소요기간이 오래 걸림으로써 본래의 목적을 실현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소요부품 단종 등의 사유로 부득이 변경승인을 신청하거나 변경승인을 받기가 어렵거나 아예 불 가능한 경우가 많아 사실상 같은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모델 번호를 부여하여 신제품으로 형식승인을 받는 사례마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변경승인의 협용범위는 확대("위해 가능성"을 제외한 범위내에서)되어야 하며 이로 인한 승인절차의 간소화와 기간단축 또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는 동일 품목에 대한 중복 규제에 관한 사항이다.

「전자파장해검정」등 국가기관에서 동일한 품목에 대해 중복규제를 함으로써 행정낭비 및 업계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예를들면 모뎀, 신용카드 조회기 등 상당수의 품목이 전파법에 의해서 전자파장해 검정을 수검해야 하고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해서 다시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중복규제로 인해 관련기업으로서는 시간상, 절차상, 비용상의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정부의 입장으로서도 행정인력 등의 낭비는 물론 비효율적인 행정이라는 비난을 받을 소지를 갖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동일 품목에 대한 중복규제는 검사 항목의 조정 또는 통합 1품목에 대해서는 1개의 형식승인 또는 검정만 받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

셋째, 형식승인 면제대상 기자재에 대한 사항이다.

우선 여행자가 가지고 들어오는 기자재에 대한 관리의 부실을 들 수 있다.

현재 외국에서 들어오는 여행자가 가지고 오는 제품에 대해서는 형식승인 면제는 물론 신고절차도 전혀 없으며 대수 및 대상품목에 대한 제한도 없다.

이는 여행자의 수입을 조장한다는 단순한 문제뿐 아니라 형식승인제도의 고유 목적인 기간통신망에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전혀 없고 코드리스폰 등의 경우에는 출력이 규정치를 초과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도 왕왕 있다고 한다.

게다가 사후관리도 전혀 없고 집계조차 되지 않아 실태파악도 정확하게 안되고 있으며 또한 기업의 연구개발용 기자재 등과의 수입절차 뿐 아니라 국내 생산제품이 100% 형식승인을 취득해야 하는 점과 무선설비 형식검정제도에서는 최소한의 규제절차를 두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들과의 형평성에도 위배 된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시험연구용 기자재에 관한 사후관리('95. 7. 1개정)의 경직성이다. 기업이나 대학, 연구소 등에서 시험·연구용으로 수입하는 기자재까지도 사후관리를 강화함은 연구개발 활동을 위축할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본래 시험·연구용 기자재는, 목적상 세부적인 분해·조립을 거듭하여 파손 등의 경우가 많은데 이를 끝까지 사후관리 함은 불합리하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크다는 것이다.

정부가 지금까지 시험·연구용 기자재를 형식승인 면제대상으로 하였음은 연구개발에 대한 활동을 지원하자는 취지인 바, 일부 수입자들이 이를 판매할 우려가 있다 해서 제도를 개정(1995. 7. 1)하여 이를 제한하였다.

이는 목적에 비해 지나친 제도라는 생각이다. 더구나 여행자가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아무런 신고절차도 두지 않는 것과 비교해 볼때에도

불합리한 규정이라는 것이 관련업계의 지배적인 여론이다.

따라서 여행자의 수입품도 시험연구용 기자재 등의 경우처럼 일정한 신고절차를 두고, 품목 및 대수를 제한할 뿐 아니라 형식승인 제품과 동일 모델일 경우에만 형식승인을 면제하여야 할 것이며 시험연구용 기자재에 대한 사후관리는 면제되어야 한다고 본다.

넷째, 대상품목의 불분명성이다.

최근(1995. 7. 1) 형식승인 대상품목이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구체화 되었으나, 아직도 미흡하다는 것이 업계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지금도 대상품목 여부를 확인하는 데에만 관련기관과 업계의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데 관련규정에는 아예 대상품목임을 정식으로 확인 받는 데에도 7 일이 소요 됨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형식승인 대상품목을 정확히 하여 관련기관과 업계의 혼선을 해소하여야 한다.

품목마다 구체적으로 정의를 내리는 등 개념을 명료화하여 고시된 대상품목만을 보면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업계 등이 전문가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품목을 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술변화 및 신규서비스 개시 등에 따라 수시로 개정 고시하여야 빠르게 변하는 추세에 맞출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전기용품형식승인」이나 「전자파장해

검정」등 보다 구체적으로 품목을 정의하고 있는 제도를 참고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다섯째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이다.

무엇보다도 사후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특히 수입기기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기준부재)하여 이러한 문제로 인해 사후관리기관 및 관련 업체 모두 적절한 대응이 곤란하다는 지적이다.

그리고 사후관리 시행시 사후관리 기준에 대한 공개화가 미흡하다. 관련규정을 사후관리 기관의 내부지침으로만 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사후관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업체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의 개선방안으로는 사후관리에 대한 지침을 보다 구체화하고 이를 공개화하는 것이다. 이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수입기기에 대한 사후관리를 최소한 국내 생산제품 수준이상으로는 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기준 제정시에는 가능하면 폭넓은 의견수렴과 외국의 제도 등을 충분히 연구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모델별 형식승인 제도이다.

현행 방식은 모델별로 받게 되어 있어, 외관 디자인이나 단순한 기능 추가 등의 경우에도 새로이 승인을 취득함에 따른 기간과 비용 인력 손실초래·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통신기기의 특성상

형식승인에 소요되는 기간(최고 75일 소요, 시험 : 30일(15일 연장가능), 승인 : 20일(10일 연장가능)만큼의 출자가 지연되고 있다.

모델변경시의 번거로운 절차로 인해 소비자들의 다양한 제품사양 변화욕구에 적절히 부응하기에 어려운 경우도 있으며 이는 정보통신기기 공급 활성화에 저해요인중 하나가 되고 있다.

개선방안은 모델별 전수 형식승인 방식에서 탈피하여 단순한 모델변경은 형식승인을 면제하는 것이다. 즉 전기통신망에 위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부분의 범위를 명확히 정하여 형식승인 면제대상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2) 무선설비 형식검정 및 기술기준 확인증명 제도상의 문제

가. 현황

근거법령은 전파법 제29조의 무선설비 형식검정 및 기술기준 확인증명 규칙이며 대상품목은 전파를 이용한 무선기기이며 규제의 목적은 전파환경 보호의 이용자의 안전도모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첫째, 중복규제이다.

휴대폰, 카폰, 무선후출기 등은 국가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시험검정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통신서비스 사업자가 다시 테스트하므로서 중복규제를 받는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

휴대폰 및 카폰의 경우 형식검

정과 기술기준 확인증명까지 마친 후에 한국이동통신에서 새로운 모델마다 필드 테스트를 실시(15일 내외 소요)하며, 무선호출기는 한국이동통신과 제2사업자(나레이 등통신 등 10개사)로부터 필드테스트를 받아야 제품 유통이 가능한 실정이다.

앞으로 신세기통신이 내년부터 서비스를 개시하고 무선호출사업자로 추가로 지정되면 모든 사업자로부터 필드 테스트를 받아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국가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형식검정제도를 통신사업자가 믿지 못하거나 국가기관의 형식검정제도에 문제가 있음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경우가 인정되면 전화기, 패시밀리 등은 한국통신이 TV·냉장고 등은 한국전력이 다시 승인을 해야한다는 논리가 성립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는 당연히 형식검정과 통신사업자의 필드 테스트 중 한 가지만 실시하도록 조치되어야 한다.

가능하면 국가에서 실시하는 형식검정만으로 제품의 유통이 가능토록 개선하고 이를 위한 검사항목 조정과 관련 시험기관의 검사장비 확보 등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둘째, 검사기준 문제이다.

형식검정시 실시되는 검사기준 설정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상당수의 품목이 측정장비와 시험조건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음으로 인해 시험기관 및 수검업체의 혼선을 초래하며 사전대비가 곤란하다는 것이다.

개선방안으로는 시험기준 등에 관한 조건을 구체화하고 공개화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시험조건, 횟수, 측정장비 등이 충분히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사후관리의 문제인데 이는 앞에서 검토한 전기통신기자재 형식승인과 별차이가 없으므로 생략한다.

넷째, 기술기준확인증명제도에 관한 사항이다.

현재 휴대폰, 카폰, 생활용 무전기 등 생산출하시 완제품화되어 있는 제품도 형식검정을 득한 후 출하되는 제품마다(전수검사 또는 샘플검사) 수수료(11,000원 ~31,000원)를 지불하고 있고 이후 5년 내외마다 이용자가 직접 정기검사를 받게 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전파환경 관리를 한다는 목적하에 지나치게 기업과 국민에게 금전적, 절차적 불편을 초래시키는 일로 세계적으로 사례를 찾기 어려운 과잉 규제라는 것이 관련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더구나 이들 제품을 무선국 허가품목으로 지정하여 허가신청료(15,000원)와 면허세(인구 50만 이상의 시 기준 27,000원)까지 받고 있음을 부당하다는 것이다. 면허제도가 본래 특정한 기술이나 능력소지자에 한해 허가해 주는 제도라는 관점에서 볼때 휴대폰등 누구나 가입만하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에 면허라는 제도를 적용함은 불합리하다.

따라서 기술기준확인증명(정기검사포함) 대상품목은 전면 재조정되어야 하는데 휴대폰·카폰·생활무전기 등의 품목은 미국·유럽 등 선진국 제도에 비교하여 대폭 삭제하여야 한다.

무선국 면허대상품목 또한 대폭 조정되어야 한다. 미찬가지로 휴대폰·카폰 등 외국사례 등을 참조하여 전면개선하여야 한다.

3) 전자파장해검정

끝으로 전자파 장해 검정제도이다. 전자파 장해에 대한 규제는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이의 필요성은 대체적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다만 전기통신기자재 형식승인이나, 전기용품형식승인과 종복 시행되고 있는 제품은 전자파 장해 검정에서는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